

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

[시행 2024.12.31]
(일부개정) 2024.12.31 조례 제2207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행정국 사회복지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3-550-207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
3. “보건위생물품”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말한다.
4. “보건위생물품 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”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① 지원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는 신청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. <개정 2024. 12. 31.>

1.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여성청소년

나. 다자녀 가정

다. 그 밖에 태백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가.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

나. 다자녀 가정 중 19세 이상 54세 이하의 여성

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(상·하반기)로 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4조(지원액)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「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」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지원방법) 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중단 및 환수)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

2.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 위생물품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

제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「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안내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<2020. 7. 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태백시 조례 제2207호, 2024. 12. 31.> (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